

논 단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쟁점 및 조화방안
이연우 · 조현구

■ 한국사회의 이주민 참정권 문제
박호성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쟁점 및 조화방안



이연우*
(고려대학교 행정학석사)



조현구**
(고려대학교 조교수)

제1장 서 론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화의 심화로 복수국적¹⁾자의 발생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각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수국적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복수국적에 대한 태도는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우리 국적법은 그동안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해 오다 최근 제10차 개정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후천적 복수국적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수국적 허용에 소극적인 데에는 복수국적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²⁾ 이러한 국민정서는 그간 복수국적에 대한 생산

적인 논의를 어렵게 했으며, 최근 국적법 개정 시에도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³⁾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가 정확한 사실에 기인한 것인지, 복수국적이 구체적으로 병역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이 병역의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병역의무자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양립되어 왔다. 임지봉(2003)은 이중(복수)국적 허용이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⁴⁾ 최신용 외(2003)은 「재외동포 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합법적 병역기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하였다.⁵⁾ 한편, 정인섭(2004), 석동현(2008)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잠재적 병역자원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중국적자 중 병역미필자들을 빠짐없이 군대에 보내기 위해서도 오히려 제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⁶⁾ 또한, 이철우(2008)는 병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무 이행은 이중·단일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자의 거주지가 중요한 것이며, 이는 권리행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⁷⁾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위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 이를테면 복수국적제도와 그와 관련한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이 충분해 보이지 않으며,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이렇다 할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수국적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적 및 병역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의 쟁점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회일반의 부정적 인식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없는지를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역의무와 조화될 수 있는 우리의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우리의 복수국적제도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관계 법령검토를 통해 쟁점의 실제 및 사회적 인식을 재검토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병역의무와 조화될 수 있는 복수국적 허용

* 이연우(제1저자) **조현구(교신저자)

1) 종래 '이중국적'이라고 하였으나, 이중국적이란 표현은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중적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10차 국적법 개정 시(2010. 5. 4) 복수국적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통일되게 복수국적으로 표현한다. 단, 인용의 정확성 등 필요시 이중국적 표현도 병행한다.

2) 외교통상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2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24일과 26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찬성이 35.2%, 반대가 64.4%로 나타났다. 또한, 매경인터넷(매일경제신문)이 2008년 5월 2일부터 1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2,148명의 34.5%가 찬성, 64.9%가 반대했으며, 이중국적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67.5%로 가장 많은 것('정체성 약화' 20.6%, '국민정서상 시기상조' 11.9%)으로 집계되었다.

3) 이혜경(2009),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복수국적 용인을 견의하며", 법무부「국적법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p. 74

4) 임지봉(2003. 3. 10.), [온&오프 토론회] "이중국적 허용, 현행 제도 유지해야", 중앙일보

5) 최신용 외(200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한국행정학회, p. 85

6) 정인섭(2004),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p. 140

석동현(2008),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필요성", 법무부「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p. 146

7) 이철우(2008), "이중국적, 그 오해와 진실",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p. 196

의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복수국적 확대와 함께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이해

제1절 복수국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누구나 반드시 국적은 가지되 하나의 국적만을 가져야 한다는 단일국적주의를 이상적 원리로 추구해 왔다. 세계 제1차 대전 후 1930년에 체결된 「헤이그 협약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은 전문에서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선언하였으나 복수국적을 실제로 통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⁸⁾ 즉,同一 협약은 단일국적주의를 선언하면서도 복수국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규정, 예컨대 각국이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혈통주의 또는 출생지주의 등 통일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지 않고, 제1조에서 “각국은 자신의 법에 따라 누가 국적자인지를 결정한다.(It is for each State to determine under its own law who are its nationals.)”라고 하여 개별 국가에게 국적 부여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법의 적극적 저촉에 의한 복수국적 발생의 불가피성을 상정하고 있었다. 또한,同一 협약 제3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국적을 가진 각 국가의 국민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비자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포기를 희망하는 국적의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고, 이때 관련 국가는 국내법의 요건이 충족되면 국적 포기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⁹⁾ 즉,同一 협약은 복수국적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복수국적으로 인한 문제 해결책으로 두 국적국 간의 외교보호권 행사와 복수국적자에 대한 제3국의 취급에 있어 충돌을 방지하고, 국적변동에 있어 여성과 아동을 배려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¹⁰⁾ 또한,同一 협약에 부속된 「이중국적의일정사례에있어서병역의무에관한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Military Obligations in Certain Cases of Double Nationality)」를 통해 병역의무의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하였다.¹¹⁾ 同 의정서 제1조에서 복수국적자는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국적국에서의 병역의무는 면제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이러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다른 국적국의 국적은 박탈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 결국, 국적의 득상에 관한 결정과 그 기준이 각 국가의 관할사항이며 그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관계로 국제사회가 단일국적주의의 이상을 완전하게 구현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한편, 후천적 복수국적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법에 그 발생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국제적 인적 교류의 증대, 국가 간 상호의 존성의 증대 등으로 후천적 복수국적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¹³⁾ 1970년대 이후 각국은 자국민이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는 물론,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한 자국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국내법을 수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캐나다가 1977년에,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였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영국 등이 차례차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외국 국적의 취득을 국적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을 계속 자국민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⁴⁾

예컨대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을 지지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복수국적은 용인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국적선택제도가 있으나, 국적선택불이행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은 화교 정책상,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투자 유치 및 본국 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멕시코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많은 나라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수국적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도로든지 복수국적을 용인 내지 묵인하고 있는 추세로 이런 국가의 수가 80개국 이상에 달하며¹⁵⁾, 국적 부여에 있어서도 혈통주의 내지 출생지주의 중 어느 하나만을 택일하지 않고 이를 병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¹⁶⁾ 즉, 세계 각국은 복수국적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국적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¹⁷⁾

8) 법무부(2008),「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p. 17

9) 김영석(2004), “국제법상의 이중국적의 취급”,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pp. 95~96

10) 이철우(2004), “이중국적의 규범적 평가”, 「법과 사회」 제27권, 법과사회이론학회 p. 254.

11) 이철우(2004), p. 254

12) 서칠원(2004), 이중국적자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11권 제1호, p. 51

13) 법무부(2006), 「각국의 국적관계법(III)」, pp. 9~10

14) 법무부(2006), pp. 10~11; 법무부(2008), pp. 18~19

15) 법무부(2009),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p. 11

16) 조정남(2005), “국적의 문호개방시대”, 「민족연구」 통권 제23호, p. 9. 예 의하면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의 두 가지 원칙을 공존시켜가고 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나라의 수는 미국, 캐나다 등 47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17) 법무부(2008), pp. 19~21

제2절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

우리나라의 복수국적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48년 12월 20일 국적법 제정 당시에는 후천적 복수국적은 불허(법 제12조)하였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항구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복수국적자에게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고, 단지 국적이탈을 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법 제12조 제5호). 또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람에 대하여 우리 국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없었고(법 제3조),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에도 외국국적 상실을 요구(법 제5조)하였으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상실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즉,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자동 상실시켰으나, 그 밖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경우 등에는 강제로 복수국적 상태를 해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1962년·1963년·1977년 1·3차 개정을 거쳐 1997년 12월 13일에 제4차 국적법 개정(1998년 6월 14일부 시행)으로 많은 내용의 변화¹⁸⁾가 있었으나, 복수국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국적선택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하였고, 국적선택 기간동안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 국적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¹⁹⁾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이하 ‘병역이 해소된 때’라 한다)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만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병역이 해소된 때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²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18) 1997년 제4차 국적법 개정은 전부개정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선천적 국적 부여를 부계 혈통주의에서 남녀 평등원칙에 따라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전환하였다. 이는 우리정부가 1984년에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또한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처와 결혼할 경우 우리국적을 자동 부여하던 것을 2년 이상 국내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귀화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9) 병역법 제8조(제1국민역 편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2항에 따라 18세부터라 함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지칭

20) 국적법(법률 제5431호, 1997.12.13, 전부개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807호, 1998. 6. 5, 전부개정) 제16조 참조

- 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다. 제2국민역²¹⁾에 편입된 때

이러한 국적선택제도의 도입으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복수국적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기보다는 국적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만 20세 전)가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년이 되고 난 후 2년 내(만 22세 전까지)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성년자(만 20세 이후)가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국적선택을 성년자가 된 후 자기결정을 통해 2년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제4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그 전까지는 후천적 복수국적을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억제, 방지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예외적·부분적으로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²²⁾ 즉,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혼인·입양·인지·수반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자동(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국적법 제15조).

물론 이 경우에도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6개월 내에 前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본국의 법률이나 제도상 그 기간 동안 前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 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2005년 5월 24일에 개정된 제7차 국적법 개정 법률(소위 ‘홍준표 법’)은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이하 ‘원정출산자’)는 병역이 해소된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이탈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국적법 제12조).²³⁾ 아울러,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는 병역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하나의

21)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하며(병역법 제5조), 신체등위로는 5급이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가 된다.

22) 석동현(2004), p. 153

23) 국적법(법률 제7499호, 2005. 5.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http://law.go.kr/lslInfoP.do?lsiSeq=67482&lsId=001435&chrClsCd=010202&urlMode=lslE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표-1〉 복수국적제도 연혁

시기	주요 내용
1948. 12. 20 (국적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부여 : 부계 혈통주의 채택 ○ 국민이 선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 시 : 복수국적 보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이탈 : 허가제 ○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 시 : 우리국적 자동 상실 ○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우리국적 취득 시 : 복수국적 보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인지의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의무 규정 없음 - 귀화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만 있고 제재 규정 없음
1962.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우리국적 취득 시 6개월 내에 외국국적 포기의무는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 규정은 없음
1963. 0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우리국적을 취득하고 6월이 경과하여도 외국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우리국적 상실
1998. 0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부여 : (부계에서)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전환 ○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 동안에만 복수국적 보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이탈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예외적 · 부분적으로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혼인, 입양, 인지, 수반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하고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할 경우 (이 경우도 국적선택기간 동안만 복수국적 허용)
2005. 0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정출산자는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 제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그전 보다 국적선택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한 것은 당사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권자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18세를 성년으로 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국적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해 줌으로써 국적선택에 있어서 좀 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복수국적 제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표 1〉과 같다.

현행 국적법은 지난 2010년 5월 4일, 제10차 개정된 법률로서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가장 주된 개정내용은 국적선택제도를 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것을 대한민국에서 외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서도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종전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24) 홍준표의원 대표 발의 국적법중개정법률안(2004.11.12), p. 2

〈그림-1〉 국적선택 기간

		0세	18세(3월말)	22세*	국적선택 명령**
우리국적 선택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서약)	여성	우리국적 선택 가능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서약 중 택일)			우리국적이 상실되기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를 통한 국적선택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불가)
* 협의의 원정출산자는 불행사서약 불가	남성	위와 같음			병역을 필한 사람은 그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그 밖에는 위와 같음)
외국국적 선택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고 가능		우리국적이 상실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 가능	
* 국외거주자만 가능		남성	국적이탈 신고 가능 (원정출산자 제한)	병역이 해소된 이후부터 우리국적이 상실되기 전까지에만 국적이탈 신고 가능	

* 위 표의 22세는 국적선택기간이 되는 연령으로서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때부터 2년을 더한 연령까지가 국적선택기간이 됨

**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적선택을 명하게 됨

〈표-2〉 복수국적의 보유 유형

구분	복수국적 발생 유형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한(항구적 복수국적 보유)
선천적 복수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산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세 전까지 (협의의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인 부 또는 모가 혈통주의 국가의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산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세 이후에는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경우에 한해 그로부터 2년 이내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외국국적을 혼인, 입양, 인지, 수반에 의해 자동(비자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로부터 2년 내 (2년 후에는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경우에 한해 그로부터 2년 이내)
후천적 복수국적	【외국인이 우리국적을 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 국익에 기여할 과학 등 우수 외국인재 ○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내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우리국적을 회복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 입양한 사람 ○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한 동포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국익에 기여할 과학 등 우수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국적을 회복한 때부터 1년 내

만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항구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선택기간 내에만 허용되나, 남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병역을 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적법 제13조 제2항). 반면, 제10차 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이하 ‘협의의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한편, <표 2>는 현행 복수국적제도를 발생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때, 복수국적자들이 항구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기 위하여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일정기한 내에 하여야 하며,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표 2>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항구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제3장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의 쟁점

복수국적 찬성론자들은 복수국적의 확대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유출을 줄이고, 외국 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의 경감으로 거주국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취득하여 재외국민들의 거주국 내 정착과 동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민자녀들의 통합·안정된 인구와 좋은 노동력의 확보·외국인의 집주화 방지·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재정적 원조 등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²⁵⁾ 반면, 반대론자들은 병역기피·특례입학·사회보장 이중지급 및 외교적 보호권·형사 관할권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²⁶⁾ 여기서는 실제 복수국적 확대가 논란의 쟁점인 병역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관련

25) 정근식(2004), “이중국적을 보는 사회적 시각”,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p. 15

26) 법무부가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08. 7.22.)를 위해 정부부처에 의견 조회한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의 형사 관할권은 대한민국 단일국적자와 차이가 없으며, 범죄인 인도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여부의 문제이며, 복수국적자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사회보험 이중지급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본인의 납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복수국적자라 하여 특별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외국에 있는 재산·소득의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나 이는 복수국적자에게만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단일국적자라도 외국에 거주할 경우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특례입학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학교 특례입학 문제는 국민처우 원칙 조항이 신설·적용될 경우 복수국적자의 특례논란이 해소될 수 있으나, 외국인학교 입학의 경우는 복수국적자를 국민으로만 처우하는 경우에도 ‘외국시민권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보다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하여 3년 이상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복수국적자가 제3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3국은 두 국가 중에서 복수국적자가 ‘진정한 연관성’을 가진 실효적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므로 외교적 보호권의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무부(2008). pp. 42~45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절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국외 출국이 가능하다. 이때 국외 출생자와 같이 처음부터 국외 체류 중에 있는 사람도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의하면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 출국한 사람, ii)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iii)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출국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외 체류 중에 있는 사람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의 자세한 요건은 병역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복수국적자는 <표 3>에서와 같이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별표3·연번4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 한하여 37세까지를 허가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외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병역이 연기되며, 연기기간이 끝나는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이 지나면, 병역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이 병역을 연기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내에서의 생활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비단 복수국적자 뿐만 아니라 <표 3>의 연번 1·3과 연번 5·6에 해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복수국적자 보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기가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연번1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연번4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체재 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거나,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 또는 모가 국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할 것을 허가요건으로 하는 것은 원정출산 등을 통해 편법으로 병역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해된다.

〈표-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연번	주 요 내 용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4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이와 같이,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37세까지 연기 받게 되나,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국내에 1년의 기간 중에 통산 6개월²⁷⁾ 이상 장기 체재를 하면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즉 이럴 경우는 1년에 절반 이상을 국내에 체재한 것이므로 생활 근거지를 국내로 옮겼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27) 6개월이라는 기간 계산은 계속되는 기간일 경우는 민법의 기간 계산법을 따르면 되겠지만 이와 같이 통산의 개념일 경우는 일수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4에서 통산 6개월의 의미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8조에서 영리활동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²⁸⁾

결국 복수국적자에 대한 병역제도는 일반 국외이주자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혜도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요건은 국외 영주권자 등 일반 이주자 보다 더 강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잠재적)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및 상실

먼저 국적이탈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우리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우리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은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복수의 국적을 보유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로 당자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인 남자에 대하여는 국적이탈을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즉, 국적이탈제도는 제4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국적선택제도가 도입(1998. 6. 14. 시행)되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나, 제1국민역 편입일(18세가 되는 해 1월 1일)²⁹⁾ 이후에는 병역이 해소된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국적법에 명시되게 되었다(제12조, 제14조).³⁰⁾

한편, 당시 우리 국적법은 국적이탈에 대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만 이를 제한하였고, 그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이탈을 허용함으로써 병역을 회피하고자 미국 등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소위 원정출산³¹⁾이 날로 늘어나는 상

28)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촬영·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9) 2005년 5월 24일 시행 국적법부터 3개월이 늘어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

30) 외국의 경우에도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 국적이탈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미합중국을 위하여 병역에 복무할 것을 선서토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방군인으로서 그 법률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자로서 국방부 등이 국적이탈에 이의를 제기한 자는 국적이탈을 불허(국적법 제22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현역복무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역 복무 대신 최소 3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는 국적 포기를 보류시킬 수 있다(헌법 제128조)고 한다. 법무부(2008), p. 40

31) 2003~4년 당시 원정출산은 상류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일부까지 확산되었고, 연 5천명 정도에 이르는 규모였다고 한 대정근식(2004), 이중국적을 보는 사회적 시각,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p. 34 참조.

황이 발생하였다.³²⁾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소위 ‘홍준표 법안’이 2005년 5월 24일 시행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정출산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도 병역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표 4>와 같이 홍준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폭주하였고 대부분이 병역미필 상태였다. 이는 당시 많은 복수국적자들이 복수국적 지위를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생각이 있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³³⁾

<표-4>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현황³⁴⁾

성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770	826	1,407	2,941	673	726
남	683	709	1,270(1,208)	2,711(2,611)	530(501)	552(498)
여	87	117	137	230	143	174

* () : 병역미필 상태에서 국적이탈 인원

또한, 우리 국적법은 최근 제10차 개정 법률에서도 국적이탈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국적이탈신고를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표 5>와 같이 복수국적을 취득한 상당수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들이 외국인으로 살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에서 국적을 쉽게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³⁵⁾

<표-5> 국내·외 국적이탈자 현황³⁶⁾

연도 구분	(단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10월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이탈자 수	563	844	1,375	1,566	183	490	236	490	38	238	300
합계	1,407		2,941		673		726		276		718

32) 임지봉(2008), p. 371

33) 임지봉(2008), p.374 한편, 이와 같이 병역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개방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서 나오는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다’고 하면서 ‘복수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에는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6년 11월 30일 기각 결정(2005헌마739)을 하였다.

34) 법무부(2008), p27

35)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2009년의 경우 총 혼인 건수 대비 10.8%인 33,300건이 외국인과 결혼하였고, 이를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상당수는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서는 국적이탈을 불허하게 한 것이다. 법무부(2010a), p. 155

36) 법무부 보도자료(2009.11.13), 전계서, p. 8

이와 같이 과거 10여년간 국적이탈 제도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폭 강화되어 왔고, 그 결과 <그림 2>의 색칠한 부분과 같이 오히려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림-2> 남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 범위 확대 연혁



: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 제한 = 복수국적 허용 단, 국내 거주자는 병역과 별개로 국적이탈 제한

반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외국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병역과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적상실자는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이탈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³⁷⁾ 국적상실자의 수를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한 인원수(표 6-2)와 비교하면 국적상실을 통한 병역자원의 유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됨으로써 병적이 제적된 경우와 같이 이슈가 되었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복수국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국적을 자동 상실시킨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복수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단일국적주의가 문제였던 것이다.

37) 물론 국적상실자 중에는 국민이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인원 외에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을 경과하는 등으로 국적이 상실된 인원도 소수이기는 하나 포함되어 있다.

〈표 6-1〉 연도별 국적이탈·상실 현황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적이탈	2,941	673	726	276	886
국적상실	22,846	21,699	22,802	20,163	21,136

〈표 6-2〉 병역미필 상태에서 국적이탈 현황

연도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10월
병역미필자수	1,208	2,611	501	498	217	468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남자들의 현황임

제4장 복수국적의 혼용범위 확대

제1절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한 국적상실의 제한

우리 국적제도는 외국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컨대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혼인·입양 등과 같은 섭외적 신분행위로 인해 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바로 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제도를 통해 본인의 의사로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체가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로 외국국적을 선택³⁸⁾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없게 된다.³⁹⁾ 따라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우리국적을 바로 상실시키게 된다. 〈그림 3〉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상실 과정



38) 우리 국적법상 국적의 '취득'과 '선택'의 차이를 새겨보면, '국적의 취득'은 어떤 국적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국적의 선택'은 어떤 국적을 원해서 적극적인 의사로 선택한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선택하지 않은 국적은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39) 김상겸(2008), 국민의 의미와 이중국적의 문제, 법무부「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p. 129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적제도는 국민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남자에 대하여는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국적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국적이탈의 제한이 왜 외국국적을 출생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우리국적 이탈 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우리국적을 상실시키는 것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국적의 자진취득 행위 안에 우리국적의 이탈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어 우리국적을 상실시킨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의 '국적이탈 의사'에 대하여도 '국적이탈 신고'와 동일하게 병역의무와 관련된 제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국적제도가 그렇지 못한 것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보다 후천적 복수국적의 발생 억제에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자 하는 국적이탈 제한 제도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가령,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복수국적자에게는 18세가 되는 해 4월부터 병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을 제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점에서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국적을 상실시켜 병역을 면제받게 하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허가를 받아 대만 국적의 상실이 가능하나, 15세가 된 다음 해 1월 1일 후부터는 병역을 면제 받지 않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 또는 군복무 중인 자는 국적상실을 불허(국적법 제12조)하고 있으며.⁴⁰⁾ 프랑스도 2001년 징병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35세에 이르지 않은 남성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민법 제23의2조).⁴¹⁾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적제도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남자에 대하여는 〈그림 4〉와 같이 국적이탈의 제한 수준에 준하여 국적상실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즉,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병역이행기(18~37세)에는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 상실되지 않게 하고,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에는 국외 거주자만 국적을 상실시키고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는 병역과 별개로 국적상실을 제한하는 것이 국적이탈의 제한과 일관되는 정책이며, 이렇게 할 때 외국국

40) 법무부(2008), p. 43

41) 명순구, 이철우, 김기창(2010),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p. 138

적의 자진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소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적상실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복수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하게 되고,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을 연기 받게 되는 등 병역법령상 기준의 복수국적자와 같은 적용을 받게된다.

〈그림-4〉 남자의 국적상실 제한방안



제2절 복수국적에 대한 설문조사

이와 같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국적상실을 제한할 경우 후천적 복수국적의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 아직까지 복수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복수국적의 허용범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⁴²⁾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만 물었던 기존의 여론조사와 달리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우리국적을 상실시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제도에 대하여 20세 이상 대학생 141명과 전국 12개 지방병무청의 방문 민원인 516명을 합한 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였다(부록 I·II).

42) 2010년 4월 23일 국회 김성곤 의원실 주관 '국적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은 '개정안의 기대 미흡'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이중국적 부여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의 표출로 추진력이 약화돼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에 역점을 둬야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2010. 4.23), 귀화자 증가 따른 병역제도 개선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41080>); 이혜경(2009), 전계서, p. 74 참조

그 결과를 보면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상실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3.8%를 차지한 반면, 지금과 같이 병역과 무관하게 우리국적을 자동 상실시켜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4.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병역기피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이 복수국적 허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난 과거의 여론조사가 오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본 설문조사에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국적상실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들에 비해 지방병무청 방문 민원인이 상당히 높았다. 남자의 경우 복무만료자보다 복무 중에 있거나 병역연기 중에 있는 사람일수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적상실의 제한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병역을 이행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7〉 국적상실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 분	계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상실을 제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이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상실하여야 한다	기 타
전체	657명	419명(63.8%)	229명(34.8%)	9명(1.4%)
남성	545명	350명(64.2%)	187명(34.3%)	8명(1.5%)
여성	112명	69명(61.6%)	42명(37.5%)	1명(0.9%)
대학생	141명	81명(57.5%)	55명(39.0%)	5명(3.5%)
병무청민원인	516명	338명(65.5%)	174명(33.7%)	4명(0.8%)
병역연기	244명	172명(70.5%)	68명(27.9%)	4명(1.6%)
복무중	114명	75명(65.8%)	38명(33.3%)	1명(0.9%)
복무만료	175명	96명(54.9%)	76명(43.4%)	3명(1.7%)
병역면제	10명	5명(50.0%)	5명(50.0%)	0명
무응답(남성중)	2명	2명(100%)	0명	0명

또한, 법무부 주관으로 2008년에 실시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정 조건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하였고,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68.1%가 찬성하였다.⁴³⁾ 이는 우수외국인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71.3%가 찬성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근소한 차이($\Delta 3.2\%$)이다.⁴⁴⁾ 한편, 2008년 법무부의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 결과,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절대다수인 90.5%가 찬성하였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43) 법무부(2008),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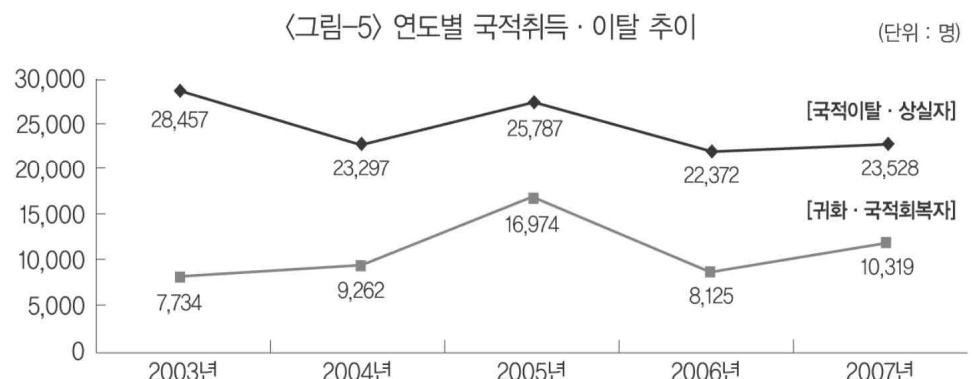
44) 우수외국인재에 대하여는 제10차 국적법 개정 시 후천적 복수국적의 허용대상에 포함하였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후천적 복수국적의 허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부(2008), pp. 32~36.

대한 질문에도 52.4%가 ‘있다’고 답하였다.⁴⁵⁾

제3절 복수국적 허용범위의 확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이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외교적 보호권, 형사 관할권, 사회보장 부정혜택 등에 대하여는 정부부처의 의견에서와 같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⁴⁶⁾

반면에 우리의 국적제도는 그동안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해 온 결과(그림 5)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우리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이 123,441명인데 반해 귀화자와 국적회복자는 52,414명으로 71,027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국민의 유출 인원의 대다수는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로서, 이는 우리 국적제도가 국민의 후천적 복수국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인지 등 섭외적 신분행위로 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적 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원은〈표 8〉과 같이 극히 소수에 지



* 사유별 : 혼인 9명, 미성년자녀 9명, 인지 1명, 입양 0명

45) 법무부(2008), p47

46) 앞의 각주 25번 참조

나지 않는다. 결국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 및 국제사회의 복수국적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후천적 복수국적을 현재보다 꽤 넓게 허용할 필요가 크다.

이와 같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종전에는 국적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병적이 제적되었던 인원이 복수국적인 병역의무자로 남게 된다.

한편, 종전에는 외국의 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국외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유실을 막을 수 있어 더 많은 병역자원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표 3〉에서 보았듯이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복수국적자일 경우가 영주권자 등 일반 이주자일 때 보다 더 강하므로⁴⁷⁾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다 하여도 병역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2008년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2.4%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 확대시 우리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 등이 국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복수국적자가 국민의 권리나 향유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등의 이중적 행태를 보일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5장 복수국적 허용 확대시 고려사항

제1절 병역 미해소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당시 재외동포들이 요구한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납세·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복수국적 허용 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

47)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국외에 거주하여도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나,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여야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는 등으로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연기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별적으로 수용하려는데 있었다.⁴⁸⁾ 이를 위해同一 법률은 외국국적 취득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출입국과 체류, 취업 및 경제활동, 금융 및 외국환 거래 등에 있어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그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병역이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이 외국국적 취득으로 우리나라국적이 상실된 이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얻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병역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이 이탈 또는 상실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이행기(18~37세)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제한대상을 에서와 같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한정(제5조 제2항)할 것이 아니라 '병역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주관적인 요건으로 입증하기 곤란하여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서 실효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제2절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 강화

병역의무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발생하게 되며 이때 최초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게 된다. 이 때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통해 파악되므로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병역의무 부과가 지연되거나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를 지연하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제때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부과의 누락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병역법 제71조에서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등을 37세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태한 사람보다 병역의무부과가 더 곤란하게 된다. 하지만, 전입신고 해태자에 대하여는 병역법상의 행정형벌이 부과⁵⁰⁾되나, 출생신고를 해태한 사람에 대하여는 5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할 뿐이며, 병역법에는 어떠한 벌칙규정도 없다. 이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

4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1999. 9. 2.) 이유
(<http://law.go.kr/lslInfoP.do?lslSeq=57496&chrClsCd=010202#0000>)

49) 최신용 외(2003), pp. 85~86

50) 병역의무자가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84조 제2항).

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제할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금번 제10차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의 자동 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도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게 되어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출생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다.⁵¹⁾ 이로 인해 복수국적자가 출생신고를 지연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적기에 부담하지 않거나 회피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 전까지는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병역법 시행령은 당초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에 대하여는 모두 제2국민역에 편입시켰으나 인권차별 소지 등을 이유로 2005년 7.1부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토록 하였다.⁵²⁾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에 대하여도 모두 병역의무를 부과하였다. 반면, 귀화자는 모두 제2국민역에 편입시켰으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의 저해 등 사회통합에 문제가 있다 하여⁵³⁾ 2007년 1.1부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귀화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역을 이행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예외없이 병역을 부담하여야 하나 귀화자는 여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인원은〈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혈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표 9〉 귀화자 및 혼혈인으로 제2국민역 처분자 관리현황⁵⁴⁾

연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2009년	1,508명	5명
2008년	949명	7명

이러한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뿐 아니라 귀화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10차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화교 등 2대에 걸쳐 국내에 출생한 사람에게도 귀화를 통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여론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도 귀화자는 병역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국민의 정서상 용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이를

51) 법무부(2010c), 「2010 국적실무편람」, p. 31

52)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91호, 2005. 6.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53)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9호, 2006. 12.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54) 법무청(2010), 제39호 2009년 병무연보(1) p. 237; 법무청(2009), 제38호 병무연보(1), p. 299

허용하지 않았다.⁵⁵⁾ 귀화자에 대한 현행과 같은 병역감면 제도는 귀화자에 대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경감시키는 등 의 문제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귀화자에 대하여도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의무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4절 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개선

마지막으로, 제10차 국적법 개정 시 새롭게 도입한 우수외국인재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제도 등이 외국인에 비해 국민이 역차별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 우수외국인재는 귀화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바로 허용 받을 수 있으나, 국민(내국인)인 우수인재가 외국에 귀화할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무조건 우리국적이 상실된다. 다음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불편이 있어 국민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 국민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귀화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 귀화할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국적을 자동 상실시킨다. 따라서, 복수국적의 허용범위 확대 추진 시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외국인이 우리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호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국적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제6장 결 론

우리 국적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 등 비자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국적 이탈을 허용하나, 남자의 경우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국적이탈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현행 병역제도나 국적이탈제도는 특별히 병역기피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을 상실시키는 데에 있다. 이들은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로 외국국적을 선택한 것이므로 국적이탈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우리국적을 무조건 상실시킴에 따라 병역자원의 유실을 초래하게 되며, 바로 여기에 병역기피의 악용소지가 있게 된다.

55) 이금로(2010), “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p. 119

한편,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하여서는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적상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법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하여도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재외동포들도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면 병역을 이행할 의사가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와 각국의 복수국적에 대한 입법례, 국의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의 허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상당수 국민의 순유출과 적지 않은 병역자원의 유실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국적의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복수국적제도가 단일국적에 비해 국내외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역 미해소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강화·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등은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복수국적자가 국민의 권리는 향유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복수국적 허용에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겸(2008), 국민의 의미와 이중국적의 문제, 법무부「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 김영석(2004), 국제법상의 이중국적의 취급,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명순구, 이철우, 김기창(2010),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무부(1998), 「신 국적법 해설」서
- 법무부(2003), 「국적법 해설」서
- 법무부(2006), 「각국의 국적관계법(III)」
- 법무부(2008),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 법무부(2009),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 법무부(2010a), 「2010 국적실무편람」
- 법무부(2010), 「국적법 해설」서
- 법무부(2011), 「문답식 국적법 해설」서
- 법제처(1997), 국적법(법률 제5431호, 1997.12.13, 전부개정) 개정이유
- 법제처(199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1999. 9. 2.)이유
- 법제처(2005), 국적법(법률 제7499호, 2005. 5.24, 일부개정) 개정이유
- 법제처(2005),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91호, 2005. 6.30, 일부개정) 개정이유
- 법제처(2006),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9호, 2006.12.29, 일부개정) 개정이유
- 법제처(2011),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 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 병무청(2009), 제38호 병무연보(1)
- 병무청(2010), 제39호 2009년 병무연보(1)
- 서철원(2004), 이중국적자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제11권 제1호, 서울국제법 연구원
- 석동현(2004),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석동현(2008),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필요성, 법무부「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 이금로(2010), 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홍익법학」제11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승택(2007), 국적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철우(2003),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 「법과 사회」제25권,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철우(2004), 이중국적의 규범적 평가, 「법과 사회」제27권,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철우(2004),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 이중국적과 시민권의 정치사회학,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이중국적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이철우(2008), 이중국적, 그 오해와 진실, 법무부「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 이혜경(2009),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복수국적 용인을 건의하며, 법무부「국적법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 임지봉(2008), 이중국적 허용의 법적 문제, 「세계헌법연구」제14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정근식(2004), 이중국적을 보는 사회적 시각,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정인섭(2004),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 200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조정남(2005), 국적의 문호개방시대, 「민족연구」통권 제23호, 교양사회
- 최신용, 임재현, 이창원, 윤경준, 김겸훈, 차용진(200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한국행정학회

● 투고일 : 2011. 07. 22 / 심사일 : 2011. 08. 05 / 게재확정일 : 2011. 08. 15

부록 I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관련 설문지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관련 □

1. 우리나라의 국적제도는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예외 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자도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우리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현행 국적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되기 전에는 우리국적을 상실시키지 말아야 한다.
- ②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과 같이 모두 우리국적을 상실(병역면제)시켜야 한다.
- ③ 기타 ()

□ 일반사항 □

2. 귀하의 성별 및 연령은?

- 성별 : 남(), 여()
- 연령 : () 세

3. 귀하의 학력 및 결혼 여부

- 학력 : ①고졸이하 ②대졸(재학, 휴학 등 포함) ③대학원졸(재학, 휴학 등 포함)
- 결혼 여부 : ①미혼, ②기혼

4. 남성일 경우 귀하의 병역사항은?

- 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입영연기 중)
- ②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 ③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만료
- ④ 병역면제(제2국민역 포함)

○ 전국(제주 제외) 12개 지방병무청 방문 민원인 : 516명

□ 응답자 현황

1. 외국국적 자진취득 시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 자동상실에 대한 의견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상실을 제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이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상실하여야 한다	기타
419명(63.8%)	229명(34.8%)	9명(1.4%)

※ 기타 : 별도 기준 마련 필요, 본인의 국적선택 자유보장 등

2. 성별 및 연령

- 성별 : 남성 545명(83.0%), 여성 112명(17.0%)
- 연령 : 20대 522명(79.5%), 30대 69명(10.5%), 40대 29명(4.4%), 50대 22명(3.3%), 60대 9명(1.4%), 무응답 6명(0.9%)

3. 학력 및 결혼 여부

- 학력 : 고졸이하 90명(13.7%), 대학 539명(82.0%) 대학원 27명(4.1%), 무응답 1명(0.2%)
- 결혼 여부 : 미혼 533명(81.1%), 기혼 99명(15.1%), 무응답 25명(3.8%)

4. 남성(545명)의 병역사항

- 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입영연기 중) : 244명(44.8%)
- ②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 114명(20.9%)
- ③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만료 : 175명(32.1%)
- ④ 병역면제(제2국민역 포함) : 11명(2.0%)

※ 무응답 : 1명(0.2%)

부록 II : 설문조사 집계결과

□ 설문조사 기간 : 2011. 5.19 ~ 5. 27

□ 설문조사 대상 : 총 657명

- 대학생 : 141명(고려대 세종캠퍼스 113명, 단국대 28명)

